

# 2012년 서울재팬클럽 건의사항에 대한 검토의견

2012. 5.

## 지 식 경 제 부

### 1. 건의사항

- 건의분야 : 노사(4건), 금융(3건), 지재권(22건), 기타(6건)
- 소관부처 : 노동부, 금융위, 특허청, 복지부 등 13개 부처

분야	신규	계속	소계
노 사	-	4	4
금 용	2	1	3
지재권	5	17	22
기 타	3	3	6
<b>소 계</b>	<b>10</b>	<b>25</b>	<b>35</b>

### 2. 검토결과

구분	노사	금융	지재권	기타	합계
수 용	2	1	16	6	25
장기검토	1	-	5	-	6
수용곤란	1	2	1	-	4
<b>합 계</b>	<b>4</b>	<b>3</b>	<b>22</b>	<b>6</b>	<b>35</b>

\* 수용 : 일부수용 포함

### 3. 검토의견

**가. 노사관계**

건의사항	소관부처	검토의견	비고
1.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시 동의 의무 폐지	고용노동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취업규칙은 근로관계의 주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도, 근로계약이나 단체협약과 달리 사용자에게 의해 일방적으로 정해지기 때문에,</li> <li>- 근로조건에 불리한 변경이 있는 경우 기존 근로자 신뢰보호, 사용자의 자의적 해석을 방지하기 위하여 근로자 집단 동의를 얻도록 규정, 근로조건 대등결정 원칙상 존치할 필요</li> <li>○ 취업규칙의 해석 및 운영지침('09.4.24일) 공개 : 별도 송부</li> </ul>	수용 곤란
2. 유급휴가 보상 금지	고용노동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미사용 연차휴가 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경우 이는 노사간에 수당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이므로,</li> <li>- 사용자가 휴가사용촉진제도를 일방적으로 도입하더라도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상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의 효력이 우선</li> </ul>	일부 수용

- 2 -

건의사항	소관부처	검토의견	비고
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또한, 사업장에서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를 도입할 경우 근로자가 그 내용과 영향력을 이해하고 의견을 표현할만한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을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</li> <li>○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므로 건의와 같이 법 개정을 하기 어려움</li> <li>-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은 판례를 통해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인정되고 있음에도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통해 면제하는 것은 불이익 변경에 해당, 아무런 근거없이 불이익 변경이 아니라고 명확히 하기는 곤란</li> <li>* 통상 판례는 상여금·퇴직금 등 수당 규정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은 경제적·제도적인 필요성이 인정되고 법정기준을 상회하더라도 불이익 변경에 해당한다고 판시(대법원 89다카24780, 92다32357, 92다49323 등)</li> <li>○ 최근 근로기준법을 개정('12.2.1.공포, '12.8.2.시행)하여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촉진 시점을 3개월전에서 6개월전으로 앞당김</li> </ul>	
3. 비정규직 사용기간 제한 연장	고용노동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법안은 국회 계류중이나, 여야간 입장차이로 상정하지 못함</li> </ul>	장기 검토

- 3 -

건의사항	소관부처	검토의견	비고
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기간연장 방안의 무리한 추진대신 노동시장선진화위에서 고용 합리화 차원에서 기간제한 예외사유 추가방안을 다른 논의과제와 더불어 논의</li> <li>-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 추가는 노사간 이견이 첨예, 노동시장 파급효과가 큰 사안으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 형성</li> <li>- 향후 노동시장 상황, 노사 및 관계 전문가 간 충분한 논의·검토를 거쳐 신중히 검토할 계획</li> <li>○ 상용고용형 파견은 파견업체가 정규직으로 고용하여 사용업체에 파견하므로 근로자 고용안정에 기여하는 긍정적 측면이 있는 바,</li> <li>- '11년 당정은 상용형 파견을 도입하는 파견법 개정안(이주영 의원안)을 추진, 야당 및 노동계의 반대로 국회 논의과정에서 상용형 파견 삭제</li> <li>- 한편, 상용형 파견 도입시 간접고용 고착화, 정규직의 파견 근로자 대체 등 고용불안과 근로조건 저하우려에 대한 반대론도 상당</li> <li>- 따라서, 상용형파견의 법제화에 대해서도 향후 노동시장 상황과 노사 및 관련 전문가간 충분한 논의·검토를 거쳐 신중히 검토할 계획</li> </ul>	

건의사항	소관부처	검토의견	비고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4. 국가유공자 고용의무의 탄력적 운용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국가 보훈처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국가 유공자 고용의무는 헌법 제32조에 6항에 따른 특별 제도로 국내에서 기업을 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게도 고용의무 적용</li> <li>- 다만,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입주 기업에 한하여 별도 법률에서 고용의무를 면제(유예)</li> <li>○ 국가보훈처는 「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을 개정(2009. 8.7일 시행)하여 기업과 상생할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</li> <li>※ 개정내용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'고용명령'이란 용어를 '보훈특별고용'으로 명칭을 순화</li> <li>② 취업지원 대상자 5배수 범위 추천, 인재 선택권 부여</li> <li>③ 전문 직업 상담사를 통한 취업 지원과정 전문성 강화</li> <li>④ 취업능력 제고를 위해 직업능력개발 지원</li> <li>⑤ '대학생-기업'을 연계한 기업채용 우수프로그램 운영</li> </ul> </li> <li>○ 법정 의무고용 인원은 업종별로 3~8%를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지만, '11.12월, 외국인투자기업의 국가유공자 의무고용 이행률은 42.9% 수준</li> <li>- 고용의무 이행업체가 경영악화로 취업여건이 어려울시 1년간 의무고용 유예('2009.7.1일 시행) 등 경영상태를 감안한 탄력적 제도운영중</li> </ul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일부 수용</p>

건의사항	소관부처	검토의견	비고
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향후 취업능력개발을 활성화, 기업이 필요한 인재육성에 노력할 계획, 고용후 보상은 예산수반 등 관련부처 협의가 필요하여 중장기적 검토</li> <li>- 국가유공자 취업지원제도는 경제적 논리로만 접근할 사안은 아니며, 국가유공자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을 조성한다는 인식이 필요</li> </ul>	

**나. 금융**

건의사항	소관부처	검토의견	비고
5. 국외지배주주 지불보증에 의한 국내차입 지급이자 손금처리	기획재정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국외 지배주주의 지급보증도 차입과 마찬가지로 국외 지배주주의 자기 자본 출자회피에 해당하는 점을 반영하여 과소자본세제 적용</li> <li>- 국외 지배주주는 자기자본 출자 또는 직접 대부시에 발생하는 유동성 제약 등을 고려하여 지급보증 선택</li> <li>- 국외 지배주주의 지급보증은 내국법인이 독자적 차입이 어려운 경우에 요구되고, 향후 보증채무로 전환될 가능성도 큼</li> </ul>	수용 곤란

건의사항	소관부처	검토의견	비고
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국외 지배주주의 지급보증에 의한 차입이 국내차입이라 하더라도 최종 부담은 국외 지배주주라는 점을 고려, 실질적으로 차입과 동일하므로 국내·외 차입여부에 관계없이 과소자본세제를 적용함이 타당</li> </ul>	
6.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업무 위탁보고 간소화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업무위탁 보고 사후보고 제도 도입 (금융투자업규정 개정, '12.1.3)</li> <li>- 이미 보고한 위탁내용과 동일한 내용이거나 수수료 변경, 계약기간 변경 등 경미한 일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 대해 사후보고</li> <li>○ 현재 자본시장법에 따른 금융투자업자(경영금융투자업자 포함)의 업무 위탁보고는 단일 부서(금감원 금융투자업무팀)에서 수행</li> <li>* 은행, 보험 등 자본시장법상의 금융투자업을 겸영하는 자</li> </ul>	수용
7. 외환건전성 부담금 제도 등 외화자금조달에 관한 규제완화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외환건전성부담금은 과도한 차입으로 인한 자본 유출입의 급격한 변동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, 국내 시중은행 및 외은지점에 차별없이 적용</li> <li>- 외은지점의 높은 부담률은 외화차입 비중이 높은 자금조달 특성에 기인</li> <li>- 다만, 외은지점의 특성을 고려하여 본점으로부터 장기로 조달하는 자금(감감계정)은 부과대상에서 이미 제외했음</li> </ul>	수용 곤란

건의사항	소관부처	검토의견	비고
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한편, 외은지점은 이미 국내은행이 적용받는 외환건전성 규제*를 적용받지 않는 등 우대를 받고 있음도 감안할 필요</li> <li>* 외화유동성비율, 7일(1개월) 갭비율, 중장기외화대출재원조달비율</li> </ul>	

**다. 지재권**

건의사항	소관부처	검토의견	비고
8. 침해 입증의 용이화	특허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법원의 서류제출 명령권한에 관하여 이미 민사소송법 제292조, 제344조, 제347조, 제366조, 제367조 등을 통해서 당사자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문서제출, 검증, 진술 등을 명령할 수 있음</li> <li>- 또한 손해액 산정 필요자료도 특허법 제132조, 실용신안법 제30조, 상표법 제70조, 디자인보호법 제67조,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3을 통해 명령가능</li> <li>○ 특허청은 비밀유지명령제도 및 이의 위반에 대한 처벌제도를 지재권 개별법에 도입 추진 중('08. 10. 국회 입법안 제출)</li> <li>○ 일본 특허법 제105조 제2항에 해당하는 비밀심리제도는 이미 우리 민사소송법 제347조제4항에 규정, 비공개 수속으로 법률에 명기되어 있음</li> </ul>	수용

건의사항	소관부처	검토의견	비고
9. 간접 침해 규정의 확충	특허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간접침해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특허권자의 권리 남용 및 특허분쟁의 증가를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할 사안</li> <li>- 따라서, 특허권자의 권리보호 측면, 특허권자와 제3자의 형평성 측면, 국제적 조화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검토</li> </ul>	장기 검토
10. 법원에 의한 특허권 등의 유효·무효 판단	특허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특허 침해소송에서 민사법원이 제한적으로 무효항변을 인정하는 사례, 무효항변의 인정여부는 당해 재판부의 법적 판단에 달려 있음</li> <li>○ 특허권 등 무효여부는 특허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심판관으로 구성된 특허심판원에 의하여 심판을 받도록 하는 것이 가장 정확</li> <li>- 법원의 침해소송에서 특허권 등의 무효를 판단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</li> </ul>	수용 곤란
11. 무효심판의 청구인 적격제한 폐지	특허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등록 공고일로부터 3월 이내에 누구든지 무효심판 청구 가능하나 이후에는 이해관계인과 심사관만이 청구할 수 허용</li> <li>- 이는 심판청구 이익이 없으면 심판청구권도 없다는 민사소송법의 기본 원칙을 반영한 것</li> </ul>	장기 검토

건의사항	소관부처	검토의견	비고
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특허심판원의 실무상 이해관계인의 범위를 넓게 인정한다고 해서 이해관계가 전혀 없는 제3자까지 청구인 적격을 인정하는 것은 아님</li> <li>- 누구나 언제라도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면, 해약을 끼칠 목적으로 심판청구를 남발하여 특허권자에게 시간과 비용을 지불하는 문제로 심판청구를 남발하여 특허권자에게 시간과 비용을 지불하는 문제</li> <li>- 청구인 적격이 쟁점이 되어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극히 드물며, 이해관계 없는 제3자의 심판청구 남용우려를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검토</li> </ul>	
12. PCT 출원의 보정범위 확대	특허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현재 '13년 이후 시행을 목표로 특허제도 선진화(PLT 사항 반영 등)를 위한 특허법·실용신안법 개정을 진행중</li> <li>○ 특허법·실용신안법 개정안(입법예고: '11. 8. 2.~8. 22.)에는 PCT 출원의 보정 범위를 출원원문(외국어)에 기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</li> </ul>	수용
13. 외국어 출원의 도입	특허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현재, '13년 이후 시행을 목표로 특허제도 선진화(PLT 사항 반영 등)를 위한 특허법·실용신안법 개정을 진행중</li> <li>○ 특허법·실용신안법 개정법률안(입법예고: '11. 8. 2.~8. 22.)에는 외국어(일부 외국어로 제한예정)에 의한 출원을 인정하는 내용을 포함</li> </ul>	수용

- 10 -

건의사항	소관부처	검토의견	비고
14. 특허출원 거절이유 통지 응답기간 및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 신청기간 연장	특허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거절 이유통지에 대한 기본 답변기간 및 거절결정 불복심판 청구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심사기간 지연, 권리 불확정 기간 장기화로 제3자의 손해가 발생할수 있으므로 출원인의 이익 및 국제적 조화를 고려하여 장기적 검토</li> </ul> </li> <li>○ 한편, 지정기간 내에 답변이 없는경우 기간을 연장 신청한 것으로 간주 하도록 지정기간 연장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'13년 이후 시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각국 특허제도의 통일화를 목표로 하는 특허법조약(PLT) 취지를 반영하는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 개정 법률안(입법예고: '11. 8. 2.~8. 22.)에 포함</li> </ul> </li> </ul>	일부 수용
15. 특허 분할출원의 시기적 요건 완화	특허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특허결정후 분할을 통한 재출원 기회를 부여할 경우 권리확정 지연에 따른 불특정 다수의 손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분할출원 급증에 따른 심사부담 증가 등의 우려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향후 제3자 감시부담 및 분할출원 추이 등을 고려하여 분할기회를 특허 결정후까지로 확대하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검토</li> </ul> </li> </ul>	장기 검토

- 11 -

건의사항	소관부처	검토의견	비고
16. 특허출원의 다중종속청구 용인	특허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2 이상의 항을 인용하고 있는 복수의 청구항들을 또다시 인용하여 청구하는 경우 그 발명내용이 너무 복잡하게 되어 제3자, 심사관 및 법원 등이 권리범위를 파악할 때 어려움</li> <li>- 국제협력조약(PCT) 규칙 6.4에서도 “다중종속청구범위는 다른 다중종속 청구범위의 기초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”라고 규정, 이를 흠결로 취급</li> <li>○ 따라서, 심사관의 업무부담, 제3자 이해의 용이성, 국제적 조화를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검토</li> </ul>	장기 검토
17. 특허법에 의한 컴퓨터 프로그램 자체의 보호	특허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현행 법체계하에서도 기억매체에 기록된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해 보호</li> <li>○ 소프트웨어 산업발전 추이, 관련업계의 의견 및 여론 수렴, 네트워크를 이용한 프로그램 제공 행위에 대한 타국 보호사례 수집·분석을 통해 관련 사항에 대해 지속적 연구·검토가 필요한 사안</li> </ul>	장기 검토
18. 디자인 등록요건 개선	특허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전체적 제품 디자인을 먼저 개발한 후 창작성과 독창성이 높은 일부를 부분 디자인으로 보호받고자 하는 경향이 큰 업계의 사정을 고려하고,</li> </ul>	수용

- 12 -

건의사항	소관부처	검토의견	비고
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전체 디자인과 부분 디자인의 출원 순서에 따라 등록여부가 달라지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동일인간 확대된 선출원이 적용되지 않도록 디자인보호법 개정안(10.7월)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하였음</li> </ul>	
19. 물품과 수장기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 화면 디자인의 보호 확충	특허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디자인보호법 개정안에서는 평면 디자인 보호를 위해 디자인 보호 대상으로서 그래픽 심벌을 추가</li> <li>- 제안 대상인 화상 디자인 및 아이콘 디자인은 평면 디자인으로서 향후 개정안 통과시 독립적인 물품으로서 출원·보호 가능</li> <li>○ 디자인보호법 개정안 시행시 DVD 플레이어를 통하여 TV에 나타나는 화상 디자인을 모니터, DVD 플레이어 등 물품에 구애받지 않고 출원</li> </ul>	수용
20. 디자인보호법에 따른 로고와 아이콘 등의 보호 범위	특허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국회에 제출(10.7.)된 디자인보호법 개정안에 반영, 국회 심의과정에서 재검토할 예정</li> </ul>	수용
21.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무심사 물품의 재검토	특허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현재 '12.10월 시행을 목표로 디자인보호법 개정을 추진중</li> </ul>	일부수용

- 13 -

건의사항	소관부처	검토의견	비고
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'11.4월 가입한 로카르노분류 체계를 디자인 분류로 채택할 예정, 현재 사용중인 한국분류와 매칭연구를 통해 분류별로 무심사 여부를 결정예정</li> <li>- 연구결과에 따라 현재 무심사로 분류된 물품이 심사물품으로 또는 심사 물품이 무심사 물품으로 전환될 수 있음</li> </ul>	
22. 상표출원의 선출원인에 관한 규정적용의 판단시기 개선	특허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후출원상표의 인용상표가 선출원상표인 경우에는 후출원상표의 심사를 선출원상표의 거절, 취하 확정 및 등록시까지 심사 보류하고,</li> <li>- 선출원 상표의 최종지위를 반영하여 후출원상표의 등록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등록결정시를 기준으로 판단</li> <li>○ 다만, 선등록상표 취소심판 청구후 동일·유사 상표를 후출원했을 경우, 불사용 취소심판 청구권자 보호를 위하여 판단시점을 출원시로 판단</li> </ul>	일부 수용
23. 상표의 지정상품의 포괄적 기제에 관한 개선	특허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상표등록을 받으려면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하거나 사용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하며, 지정상품을 포괄명칭보다는 개별상품별로 열거하도록 함</li> <li>○ 포괄명칭은 많은 지정상품을 한번에 권리화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, 특정인에게 지나치게 넓은 권리를 허용하게 되거나, 사용하지 않을 경우 제3자의 상표사용을 방해하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</li> </ul>	일부 수용

- 14 -

건의사항	소관부처	검토의견	비고
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다만, 일본에서 전자응용 기계기구 및 그 부품(11C01)이란 포괄명칭이 인정되는 것처럼, 국내도 전자복사기 및 그 부속품(G3908) 등 일부지정 상품의 포괄명칭을 인정하고 있음</li> </ul>	
24. 특허청 웹사이트(KIPRIS)에서 제공되는 의장, 상표 검색시스템의 개선	특허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KIPRIS에서 영문이 포함된 상표명에 대한 영문검색을 지원중</li> <li>○ 해외 이용자 검색편의를 높이고자 영문검색 키워드를 한글로 기계 번역 하여 검색식을 구성하는 검색어 확장 기능('Eng-Kor')을 추가 제공중</li> <li>- 향후, 국·영문 검색결과 동일성 확보를 위하여 영문 키워드에 해당하는 한글 동의어, 유의어의 확장을 통해 'Eng-Kor' 기능을 강화</li> </ul>	수용
25. 지적재산 판례집의 제공	대법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민사소송법이 2011. 7. 18. 일부 개정되어 제163조의2가 신설, 위 규정은 2015. 1. 1.부터 시행될 예정</li> <li>- 지적재산 판결에 대해서도 민소법 제163조의2가 준용되어 2015.1.1.부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으로 열람 및 복사가 가능</li> <li>○ 다만, 개정 민사소송법 제163조의2 제2항과 같이 "열람 및 복사에 앞서 판결서에 기재된 성명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대법원규칙</li> </ul>	일부수용

- 15 -



건의사항	소관부처	검토의견	비고
		으로 정하는 보호조치를 하여야"하므로, 기업명 등이 비실명처리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요구는 수용하기 곤란	
26. 외국권리자(단체)에 의한 한국의 저작권침해시정명령 등 신청절차 간소화	문화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저작권 침해신고는 불법 복제물 신고사이트(www.copy112.or.kr)를 통해 가능하며, 신고사항에 대하여는 시정권고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음</li> <li>- '13년 이후 해외 권리자의 신고 편의성 제고를 위해 '영문' 버전으로도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개편할 계획</li> <li>○ 다만, 일본어 서비스가 필요할 경우 일본저작권정보센터가 한국저작권위원회와 MOU 체결 등 상호주의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</li> <li>○ 참고로, 한국은 저작권 보호에 있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국가(英, Economist紙, 2011.8.20)</li> <li>- 삼진아웃제도, 게시판 서비스 정지제도, 웹하드 등록제 시행 등 강력한 저작권 보호조치를 취하고 있음</li> </ul>	수용
27. 한국 시청자를 위한 TV프로그램, 극장용 영화 라이선스 비즈니스 문제	문화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저작권 보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과 홍보가 무엇보다 중요</li> <li>- 초중등 정규교과 과정반영, 순회 저작권 교실 운영, 인터넷을 통한 원격 시스템 정비 등의 성과 * 저작권교육 수혜자: 9만명('09) → 35만명('10)</li> </ul>	수용

- 16 -

건의사항	소관부처	검토의견	비고
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앞으로 단순한 저작권 지식전달이 아니라 동의와 공감을 구하는 저작권 교육 및 홍보 프로그램을 확충</li> <li>○ 저작물 유통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복제물 유통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지속적인 대응 필요</li> <li>- 이를 위해 불법복제물 상습전송자(헤비 업로더)에 대한 계정 및 게시판 정지명령 제도 도입('09)</li> <li>- 특별사법경찰제도 확대, 디지털 저작권 포렌식팀 운영, 재택 모니터링 운영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여 온라인 저작권 침해 억지력을 제고</li> <li>○ 방송포맷중 창작성이 인정될 정도로 구체적으로 표현된 것은 저작물로 보호가능한 바, 권리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</li> </ul>	
28. 국경조치의 강화	관세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통관단계에서 지재권 보호범위 확대를 위해 관세법 개정('10.12.30)</li> <li>- 지재권 보호대상 권리를 상표권·저작권뿐만 아니라 품종보호권, 지리적 표시권, 특허권, 디자인권까지 확대 * 단, 특허 디자인권은 '13.7.1. 시행</li> <li>- 대상 물품을 수출입 물품에서 환적 또는 복합환적·보세구역 반입·보세 운송 일시양륙 물품까지 확대</li> </ul>	수용

- 17 -

건의사항	소관부처	검토의견	비고
29. 지재권 침해물품 수출입 통관규제 강화, 단속직원 모조품 판별교육 확충	관세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일본으로 반출되는 국제우편에 대한 위조상품 밀수 집중단속 실시하여 한국의 '짜퉁 이미지' 탈피</li> <li>* 적발실적('09.8~'11.12월) : 총 590건, 9096점, 약 70억원 적발</li> <li>- 일본 세관의 지재권 침해물품 단속실적중 한국 수출물품의 비중 매년 대폭 감소</li> <li>* 단속실적중 한국 수출물품 비중 : '09년 6.8%→'10년 3.4%→'11년 2.0%</li> <li>○ 세관직원 지재권 침해물품의 적발능력 향상을 위해 TIPA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하여 지재권 집행역량 강화</li> <li>* 교육실적 : 15개세관, 총 5회, 437명('11년도)</li> </ul>	수용

**라. 기타 건의**

건의사항	소관부처	검토의견	비고
30. 인터넷가격 조사시 종합적이고 적정한 판단 필요성	조달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조달청은 「다수공급자계약업무처리규정」 제22조에 따라 계약업체에 우대 가격 유지의무를 부과</li> <li>- 우대가격 위반여부 판단은 시중 거래가격이 계약 상대방이 가격관리가</li> </ul>	수용

건의사항	소관부처	검토의견	비고
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가능한 공급가격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</li> <li>- 시중 인터넷을 통한 개인 간 거래나 계약상대자의 가격관리가 불가능한 거래에 대하여는 가격인하를 강제하지 않음</li> <li>* 가격관리가 가능한 공급가격 : 가격관리 가능한 총판 공급가격, 직영 대리점 판매가격, 자사 홈페이지, 카탈로그 등에 등재한 가격을 의미</li> <li>- 또한 계약 상대방의 계약조건(A/S기간, 인도조건 등)을 감안하여 우대 가격 위반여부를 판단</li> </ul>	
31.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의 사전통지 및 연기 승인	공정거래 위원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원칙적으로 현장조사 시작전 조사공문 등을 통해 조사실시를 통지</li> <li>- 단, 카르텔 조사 등 사전 통지시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경우는 예외</li> <li>○ 공정거래법과 그 시행령은 조사 및 처분의 연기신청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, 연기신청을 한 경우 위원회에서 승인여부를 결정(법 제50조의3, 시행령 제57조의2)</li> <li>- 추상적 기준인 경영상 긴박한 사유가 있다고 조사를 원칙적으로 연기해 줄 경우 적시 조사 및 증거 확보가 곤란</li> </ul>	일부 수용

건의사항	소관부처	검토의견	비고
<p>32. 전기·전자제품 등 폐기물 관리기관의 일원화</p>	<p>환경부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전기전자 제품 제조·수입업자는 ‘전기·전자제품및자동차의자원순환에관한법률’에 따라 유해물질 사용제한 등 예방규정과 재활용의무를 달성 등 사후관리 준수의무를 이행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이행실적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재활용시스템(EcoAS)으로 의무화</li> </ul> </li> <li>○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필증을 보유한 일부 전기·전자제품 사업장의 경우 ‘폐기물관리법’에 따라 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실적을 제출하고 있으나, 폐기물은 전기·전자제품 재활용과는 상관없는 사업장 폐기물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실적제출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올바로시스템(Allbaro)으로 의무화</li> </ul> </li> <li>○ 따라서 각각의 법률이 추구하는 목적과 기능이 상호 연관성이 없으며 업무의 효율성이 저하되므로 관리기관 일원화 요구는 수용 곤란</li> <li>○ 다만, EcoAS와 Allbaro시스템 중복 사용자를 위해 아이디 및 공인인증 통합 운영체계 구축 등은 검토할 계획</li> </ul>	<p>일부 수용</p>
<p>33. 약가 사후관리제도의 개선</p>	<p>보건복지부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종전에도 다수의 first Generic이 54.4%로 등재되어, 53.55%를 부여하는 이번 제도개편은 최소한의 인하</li> </ul>	<p>일부 수용</p>

건의사항	소관부처	검토의견	비고
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특허만료 Original 의약품과 Generic 가격에 차등을 두는 것은 동일효능 약제 동일가격 원칙이라는 약가제도의 취지에 어긋남</li> <li>○ 시장형실거래가 제도는 약가제도 개편으로 사후관리 효과가 상쇄되어 현재 인센티브 지급을 1년간('12.2.1~'13.1.31) 유예한 상태, 시행 과정상 드러난 문제점 등을 보완하기 위하여 약가제도협의체에서 논의중</li> <li>○ 리베이트 적발로 통보된 약제에 대하여 약가인하 조치를 진행, 향후에 리베이트 적발시 급여목록에서 퇴출하는 방안도 검토중</li> <li>○ 현장 및 전문가 등의 합의에 기초한 적정성·투명성·예측가능성 등을 높인 중장기 약가제도 마련을 위해 각 단체가 추천한 전문가로 구성된 약가제도협의체를 구성하여 약가제도 전반에 대하여 논의중</li> </ul>	
<p>34. 신약 약가산정 절차의 개선</p>	<p>보건복지부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경제성평가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약가협상은 각자 독자적인 목적이 있으므로 생략 불가</li> <li>- 이원화 체계는 유지하되, 시행주체, 절차, 기준 등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등재절차를 개선('09.8월 시행)</li> </ul>	<p>일부 수용</p>

건의사항	소관부처	검토의견	비고
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경제성 평가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 협상 과정에서 협상 참고가격으로 고려</li> <li>- 다만,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경제성 평가는 비교약제만 평가한 것으로서 협상시는 협상참고가인 대체약제 투약비용 등을 함께 고려함이 타당</li> <li>○ 약가산정기준은 환자 진료뿐만 아니라 보험재정 상황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세부적 개선사항은 추후 검토할 예정</li> </ul>	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35. 교통문제 개선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경찰청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경찰청에서는 교통법규 준수를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교육·홍보 실시</li> <li>- 특히, 교차로 꼬리물기 근절을 위해 국회에 무인장비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 계류중, 이륜차 인도주행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중</li> <li>○ 향후 중요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지도·교육을 강화해 교통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음</li> </ul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수용</p>